

2020 제 4 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 맞춤형 법제정보

일 본 제품안전법제
미 국 표시·광고법제
중 국 기업활력법제

◆ 외국법제동향

대 만 「국민법관법」
호 주 「현금사용제한법」
미 국 「로비스트법」
일 본 특정 디지털 플랫폼 법제
일 본 학교복합화 시설법제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국
회
리

호주의 「현금 사용 제한법」의 주요 내용*

윤준기 | KOTRA 글로벌지역전문가

I. 시작글

물물교환에서 시작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방법은 거래금액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며 화폐가 사용된 후, 귀금속, 동전 등으로 화폐의 종류도 계속 발전해 왔다. 거래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법정화폐로서 동전과 지폐뿐 만 아니라 수표, 어음, 신용카드 등이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가상화폐까지 나타나면서 화폐가 더욱 다양한 형태의 거래수단으로 진화 발전해 오고 있다.

유사 이래, 인류가 화폐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왔는데, 이와 함께 경제 관련 범죄의 해악과 빈도도 같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수익 및 자금출처의 은닉은 경제범죄를 감추고 검거를 회피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당국도 수사의 실마리로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현금의 사용은 상거래에 있어서 기업과 사업체의 탈세에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는데, 다른 전자거래 수단과 달리 현금을 통한 거래는 물리적인 화폐를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금거래는 다른 결제수단을 통해 거래하는 것에 비해서 제공자 입장에서 할인을 유도할 수 있으며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물론, 세금의 탈루는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현금의 사용은 경제범죄뿐만 아니라 마약거래에서도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현금이 가지는 특성, 즉 흔적이 남지 않는 결제수단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현금은 마약거래, 인신매매, 밀입국,

* 해당 기고문은 개인의 의견이며 소속회사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함을 알립니다.

밀수입 등 형사범죄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호주에서는 '지하경제 테스크포스팀(Black Economy Taskforce)'을 구성하여 그 실상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 그 노력의 결실 중 하나가 이번에 호주 의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현금사용제한법(안) (Currency Restrictions on the Use of Cash Bill 2019)'이다.¹⁾

우리가 늘상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던 현금의 사용이 제한, 또는 불법이 된다는 뉴스는 호주인들에게도 생소함과 더불어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제지에서도 비중 있게 해당 법(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사회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호주의 '현금사용제한법(안)'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요 내용과 법(안)이 시행되고 어떤 변화들이 기대가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II. '현금사용제한법(안)'의 제안 배경

'지하경제 테스크포스팀'이 호주 연방정부 재무부와 통계청, 호주 연방준비은행 등의 참여로 구성되어 조사를 시작한 것은 호주 통계청이 호주의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의 1.5%에 달하는 250억 호주달러(AUD)에 달한다는 발표와 함께 실제로 그 규모가 최대 500억 호주달러(AUD)에 달할 수 있다는 보고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사용이 마약생산과 판매 등 지하경제 범죄의 수익에 결정적인 고리 역할을 하면서 2018년 「개정 관세법(Customs Amendment Act)」, 2019년 「불법담배 즉시파기법(Immediate Destruction of Illicit Tobacco Act)」 등을 시행하며 지하경제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 효과가 크지 않았으며 지하경제 성장의 가속화를 막지 못했다. 따라서 현금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호주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 따라 대부분의 건전한 거래상의 지불수단에서 현금의 사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²⁾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금을 통한 거래 특히 소액이 아닌 큰 금액의 현금으로 하는 거래가 범죄나 지하경제에 주로 사용된다는 연관성은 여러 조사³⁾를 통해 드러났다. 따라서 10,000

1 Treasury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Black Economy Taskforce Final Report", 2017. 5. 8. 25면.

2 보고서에 따르면, 현금의 사용비중(건수)은 2007년 69% 에서 2016년 37%로 감소, 금액별 비중은 38%에서 18%로 감소하여 큰 금액일수록 현금의 사용 비중이 현저히 적으며 추세도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Mary-Alice Doyle, Chay Fisher, Ed Tellez and Anirudh Yadav, Research Discussion Paper 2017-04 - How Australians Pay: Evidence from the 2016 Consumer Payments Survey, Reserve Bank of Australia, 2017, 2면.

3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AUSTRAC), Annual report 2018-2019, 17~19면.

호주달러(AUD) 이상의 현금거래를 제한하더라도 대부분의 건전한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하경제와 경제범죄를 감소시키는 편익이 현금의 사용제한으로 초래될 불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량의 현금이 꼭 범죄에 사용되지 않더라도 발행한 실물 화폐가 대량으로 유통되지 않는 금액도 50억 호주 달러(AUD)에 이르는 점도 이 법(안)이 만들어 지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 당국은 이 금액이 호주 전체 화폐 발행 금액의 7%를 차지하며 지하경제나 범죄수익 은닉 등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물치들은 범죄에 관련된 거래에 지속적으로 이용되거나 자동차, 요트, 주택 등과 관련한 불투명한 거래에 사용될 수 있어 '현금사용제한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불투명한 거래의 상당한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금사용제한법(안)'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특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특정금액 이상의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며 프랑스의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금액의 차등⁴⁾을 두어 시행하고 있다. 내국인의 경우, 한도금액은 1,000 유로(EUR)로 호주의 법(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비록 제한금액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논란은 있으나, 이미 이를 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건전한 소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현금으로 하는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확실하게 지하경제의 성장을 방해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현금의 비중을 줄이는 효과⁵⁾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의 경우, 여러 조사를 통해서 10,000 호주달러(AUD)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2007년 이후에 시행한 설문조사(RBA 2007 Survey)에 따르면, 5,700명의 인구가 결제한 총 82,000건의 지불에 대해서 10,000 호주달러(AUD)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는 단 20건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에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5,000~10,000 호주달러(AUD)로 범위를 줄여보아도 단 한 건의 거래만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에 있어서 현금 사용의 비중은 조사 이후에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10,000 호주달러(AUD)로 제한금액을 설정한 것은 거의 대부분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4 거주민은 1,000 유로(EUR), 비거주민은 15,000 유로(EUR).

5 Friedrich Georg Schneider, Restricting or Abolishing Cash: An Effective Instrument for Fighting the Shadow Economy, Crime and Terrorism?, International Cash Conference 2017 - War on Cash: Is there a Future for Cash?, Deutsche Bundesbank, 2017, 17면 및 42면; Peter Sands, Haylea Campbell, Tom Keatinge and Ben Weisman, Occasional Papers - Limiting the Use of Cash for Big Purchases: Assessing the Case for Uniform Cash Thresholds,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2017, 19면, 43~44면, viii면.

반면, 특정 금액의 현금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지하경제와 범죄에 사용되는 비중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고, 정상적인 거래에 불편을 지속적으로 끼친다는 연구도 있다. 현금 사용을 완전히 근절하더라도 범죄자들이 존재하는 한, 어떤 방식이던지 활용 가능한 결제수단을 개발할 것이며, 그리고 양성화될 수 없는 지하경제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지하경제나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세를 방지하는 것에 관해서도 그 편익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탈세에 해당하는 현금을 통한 거래는 10,000 호주달러(AUD) 미만이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법(안)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 일부에서는 제한금액을 2,000~5,000 호주달러(AUD)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금액을 낮추게 되면, 일반적인 경제활동에서도 현금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이미 자동차 딜러나 변호사, 보험사 등 거래금액이 큰 경우 별도의 법안으로 현금 결제금액은 따로 기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기의 경제적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더라도 현금으로 하는 거래를 제한하면 국민의 자유에 대한 침해우려가 있으며,⁶⁾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금리가 되었을 때는, 은행수수료를 피할 방법이 사라지는 등, 일부의 경우에 따라 법(안)의 취지에 반해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 제정되면 지하경제와 범죄수익의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그 사회적 편익이 상당함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금사용제한법(안)’이 입법·공표되면 비록 10,000 호주달러(AUD)라는 금액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거래를 하는, 즉 현금을 주는 대상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위법행위가 된다. 이러한 점은 여러 가지 떳떳하지 못한 이유로 현금으로 하는 거래를 고수하는 거래 참여자로 하여금 탈세 등의 위법행위에 참가하는데 분명히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다.

6 호주 연방상원의원 피터 위쉬 윌슨(Peter Wish-Wilson)의 발언을 참조함.

III. '현금 사용제한법(안)'의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의 주된 목적은 현금으로 하는 거래를 통해 추구하는 탈세를 방지하고 세무당국이 정당한 과세를 집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현금의 사용을 불법화하는 것이다. 대규모 현금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탈세, 자금세탁, 사기, 뇌물, 기만 등을 방지하는 것이다. 호주에서 뇌물이 사용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뇌물을 현금 형태로 주는 것은 흔한 일이다. 현금뇌물을 사용한다면 이 역시 '현금사용제한법(안)'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

2. 제한내용

현금결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사용하여 지불하거나 받는 경우, 형사상 범죄로 취급한다. 현금이라 함은 물리적 화폐와 가상화폐를 지칭한다. 흥미로운 점은 외화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범죄 수익이나 관련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3. 적용대상

사업체 등록개인, 독립법인, 정치단체, 파트너십(Partnership, '동업체'), 기타 비법인 협회나 단체, 신탁, 연금기금, 예금기금 등 광범위한 적용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자금세탁이 기본적으로 많은 거래대상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자금세탁 과정에서 '현금사용제한법(안)'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한도 금액

10,000 호주달러(AUD)이며 외화나 가상화폐의 경우, 규칙에서 정한 계산법을 따르며 정기적, 주기적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는 각각의 결제주기를 독립된 결제로 인식하며 그 외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된 금액의 일체를 합산하여 하나의 결제로 인식한다.

5. 위법행위

한도금액 이상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수락하는 경우 위법으로 즉시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6. 처벌

호주의 벌금은 법(안)에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벌금을 60 유닛⁷⁾으로 규정하며 유닛당 금액이 변동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60유닛은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약 13,320 호주달러이다.

7. 진행단계

현재 '현금사용제한법(안)'에 대한 입법의결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내용
2019년 9월 19일	하원 제출, 1차 논의
2019년 9월 19일	하원, 2차 논의 개시 합의
2019년 10월 24일	하원, 2차 논의 및 3차 논의 합의
2019년 10월 24일	하원, 3차 논의
2019년 11월 11일	상원 제출, 1차 논의, 2차 논의 개시합 의
2020년 3월 1일	상원의 경제입법위원회 입법 권고안 통과

.....

7 2020년 7월 기준으로, 1 유닛은 222 호주달러(AUD)로서 60 유닛이면 13,320 호주달러(AUD)이며 한화로 약 1,100만원 정도이다.

IV. 종합 분석

현금은 오랫동안 거래에 사용해온 결제수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가장 익숙한 결제방법일 것이다. 신용카드와 전자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가 겨우 20년 남짓된 짧은 역사에 비해서 새로운 결제수단의 확대속도는 매우 빨랐다. 새로운 결제수단, 즉 실물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전자결제 수단의 장점은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는 것 외에도 훨씬 다양하다. 비단 사용자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자, 또 전자결제수단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많은 사업체들도 이익을 얻고 있다. 더욱이 모든 거래금액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있어 세무당국의 편리함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는 구성원들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마약에 관련된 거래와 기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를 맺은 거래들은 그 출처와 금액을 숨기고 싶어하는데 전자결제수단은 그러한 것들을 점점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범죄단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커피숍이나 식당, 소규모 소매점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하는 거래만 고수하는 곳이 많이 있다. 현금으로만 거래한다고 한다고 반드시 탈세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탈세의 유혹이 크고 쉽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호주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엄청난 수준으로 직접 복지금액과 연금지출, 의료 서비스에 지출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압도적인 1위 지출 항목이며 직접 복지비용만 해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수준에 가까운 1,320억 호주달러(AUD)⁸⁾이다. 규모가 큰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에 대한 예측과 엄정한 조세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법(안)의 서두에 밝힌 것과 같이 이 법(안)의 목적은 공정한 조세와 탈세를 방지하는 목적이 크다. 기존 화폐 중심의 결제수단이 전자결제로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시의성을 가지고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가속화 될 여러 핀테크 기술과 전자결제수단 등의 발전에 더불어 공정한 조세제도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반면에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 상응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전자결제가 보편화되고 대량의 현금 보유가 불법이 되면, 대부분의 거래를 은행과 같은 전자결제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 많은 은행은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야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국가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나 엄연히

8 Treasurer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Budget report 2019~20, 2020.

모든 예금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 예금이 보호받았다고 해서 미래의 예금도 항상 보호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당 법(안)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현금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면,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와 보호도 상응하여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호주의 금리⁹⁾와 COVID-19로 인해 닥쳐온 불황이 장기화 될 경우, 마이너스 금리도 예측되고 있어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호주의 녹색당 윌슨(Wilson) 상원의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돈으로 결제되는 시대에서 전자결제만이 허락된다면, 소비라는 기초적이고 일견 본능적인 인간의 행위에서 익명성의 자유는 사라지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 과세당국이라 해도 결제로 파악 가능한 개인의 정보가 매우 밀접하고 많다면, 시민의 완전한 자유에 제약이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은 비약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앞으로 호주의 해당 법(안) 시행에 따른 영향이나 부작용 등 운영상 추이를 계속 지켜보고자 한다.

9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호주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는 0.25%이다.

참고문헌

- Friedrich Georg Schneider, "Restricting or Abolishing Cash: An Effective Instrument for Fighting the Shadow Economy, Crime and Terrorism?", International Cash Conference 2017 – War on Cash: Is there a Future for Cash?, Deutsche Bundesbank. 2017.
- Mary-Alice Doyle, Chay Fisher, Ed Tellez and Anirudh Yadav, "Research Discussion Paper 2017 – 04 – How Australians Pay: Evidence from the 2016 Consumer Payments Survey", Reserve Bank of Australia, 2017.
- Parliament of Australia,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Report 6", 2019.
- Parliament of Australia, "Senate Economics Legislation Committee Committee report", 2020. 2. 28.
- Parliament of Australia, "Senate Standing Committee for the Scrutiny of Bills", Scrutiny Digest 8, 2019.
- Peter Sands, Haylea Campbell, Tom Keatinge and Ben Weisman, "Occasional Papers – Limiting the Use of Cash for Big Purchases: Assessing the Case for Uniform Cash Thresholds",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2017.
- Treasury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Black Economy Taskforce Final Report", 2017. 5. 8.

KLRI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 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 홈페이지 접속 → 좌측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하기 GO”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82
E-Mail. foreignlaw@klri.re.kr

FAX. (044) 868-9919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ISSN 1976-0760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0년 10월 15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